

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2. 21.(금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 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규철, 주무관 이선명 • ☎ (044)201-3870, 3871
보 도 일 시		2018년 12월 22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1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·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21일부터 40일간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(금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
○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·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(19.2.22)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·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

○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*과 동일하게 적용하여,

* 지원 분담율(국가:지자체): 특별시(서울) 40:60, 기타(광역시·도/시·군) 50:50

-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부담비율은 '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·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.

② 우선면허 부여 기준

-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를 포함하였다.

〈 우선면허 부여 기준 〉

구분	현행	개정
저상버스 (시내·농어촌·마을)	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(특별·광역시) 운행하려는 대수의 3분의 1 이상(시·군)	(좌동)
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(고속·시외)	- (신설)	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

③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

-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*로 설정하였다.

*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/농어촌/마을버스 운송사업자,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(고속)버스 운송사업자

□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‘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 상업운행 예정인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·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.’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1일부터 1월29일까지(40일간)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,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
- 전화번호: 044-201-3871, 팩스 : 044-201-5586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 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(☎ 044-201-3870), 이선명 주무관(☎ 044-201-3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